등록번호	자치행정과-11466
등록일자	2015.7.3.
결재일자	2015.7.8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마을공동체지원팀장	자치행정과장	주민자치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손기완	이창조	최선희	이경헌	代이경헌	07/08 문석진

협 조	정책기획담당관 임근래 홍보담당관 고재용

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고 싶은 우리 마을!

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 추진계획

.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업비
	기관·부서·단체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등의 관한 조례	정책기획담당관 홍보과 동주민센터	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공모사업 참여 홍보 참여자 발굴 및 사업계획서 추천	협 의	23,000천원

서 대 문 구

자치행정과

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고 싶은 우리 마을!

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 추진계획

행정구역상 제일 작은 단위인 통 단위로 마을사업을 운영하여 좀 더 현실성 있는 마을 의제를 도출·실행하고 이웃간의 관계망을 회복하여 주민 리더 발굴 및 주민들의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Ⅰ 지원근거

○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

○ 2015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사업 공모 계획(2671호, 2015.02.11)

Ⅱ 사업개요

○ **사 업 명** : 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

○ **사업기간** : 협약 체결일 ~ 2015.11.30(월)

○ **사업장소** : 서대문구 행정구역내(통단위)

※ 서대문구 행정구역내 전체(우리마을지원사업) VS 서대문구 행정구역 중 통단위(특화사업)

○ **대상사업** : 생활안전 등 생활속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동 1통단위 사업

○ **사업분야** : 주거 공동체 외 5개 분야

○ **공모기간** : 2015. 7. 10(금) ~ 2015. 7. 31(금)

○ **지원내용** : 보조금(1개 사업 200만원 미만으로 지원), 마을상담, 교육, 컨설팅 등

○ **지원규모** : 23,000천원

Ⅲ 특화사업 운영 흐름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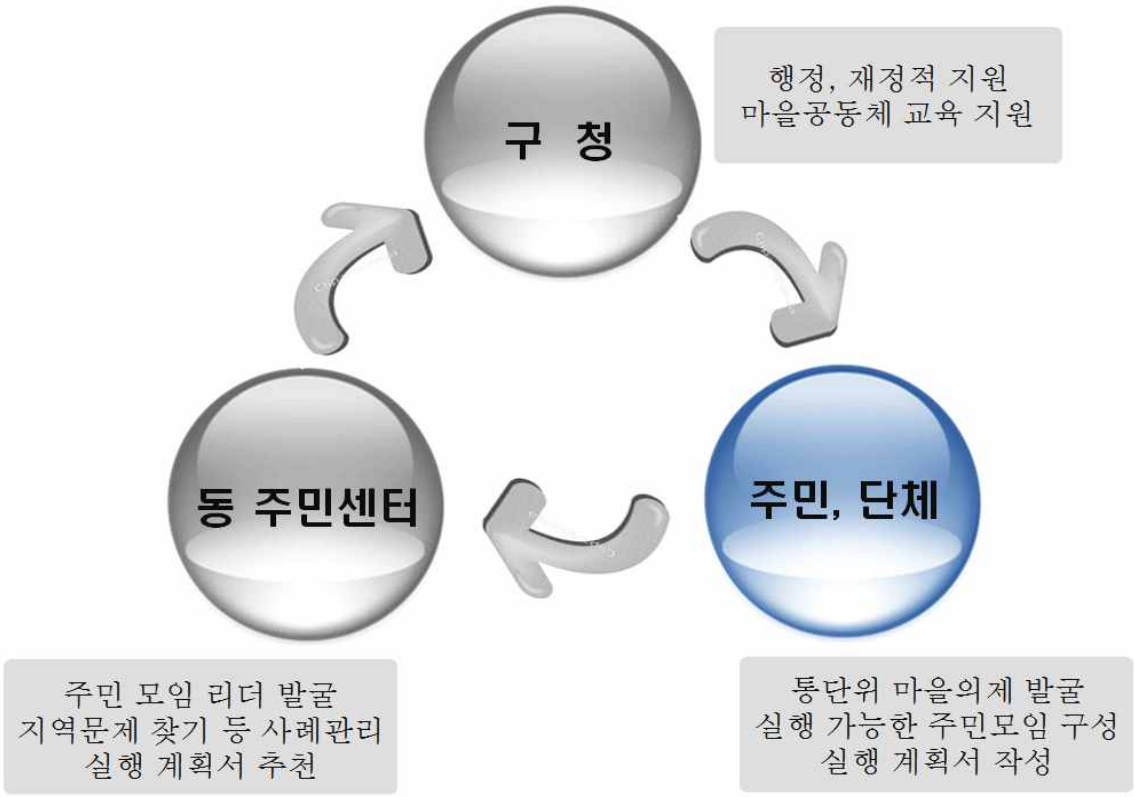

Ⅳ 추진일정

일 정	내 용
2015. 7월	사업 공모·접수
2015. 7월	신청 사업 현장조사
2015. 7월	1차 부서 검토 및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의
2015. 8월	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(사업 선정)
2015. 8월	사업 선정 통보 및 사업시행 계획서 접수
2015. 8월	협약체결 및 선정 사업지기 회계교육
2015. 8월	보조금 교부
협약체결일 ~ 2015.11.30	사업시행 및 중간점검
2015. 12월	사업 결과보고, 정산 및 평가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Ⅴ 세부 추진계획

지원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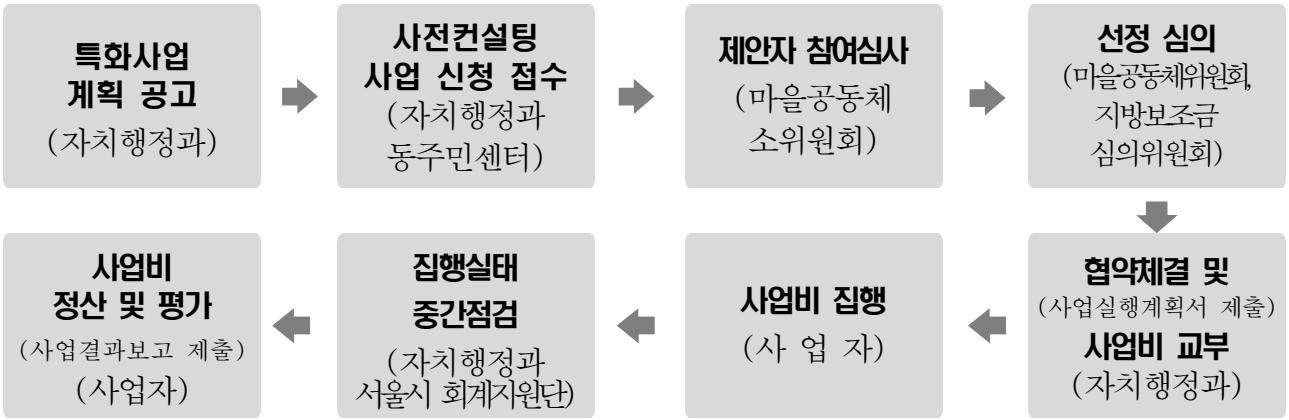

○ **신청자격** : 주소 또는 생활권(사업장, 직장, 학교 등)이 서대문구인 5인 이상의 통단위 주민(모임)·단체 *☞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대문구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*

-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간주
-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
- 대표 제안자 1인 중 1인 이상이 동일할 경우 동일 주민모임으로 간주

○ **사업공고**

- 공　　고 : 서대문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
- 공모분야(지정공모 포함)

구　분	세부내용(예시)	지원한도
이야기와 재미가 있는 **문화공동체**	마을명소 만들기, 마을신문, 마을공연, 마을소식지, 공동체 라디오, 마을축제, 벽화,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등	사업의 성격, 규모에 따라 사업별 최대 2,000천원 미만 차등 지원
함께 나누고 돌보는 **복지공동체**	공동육아, 다문화공동체, 가출 청소년 상담, 나눔 바자회 등	
살고 싶은 따뜻한 **주거공동체**	텃밭 가꾸기, 범죄 예방, 아파트 관리비 절감, 층간 소음 등 주민갈등 해소 사업	
함께 지켜가는 **환경공동체**	쓰레기 감량, 재활용,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	
지정공모	아이들을 위한 안심 학교길 조성(옐로카펫)	별도 계획 수립

사업 신청 제한

구 분	세 부 내 용
단순 복지사업비	일방적·수혜적 복지사업 (도시락(반찬)배달, 독거노인야쿠르트배달, 김장후김치전달 등)
특정정당 및 후보지지	특정정당 및 후보지지(지원)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
특정 종교 교리 전파	특정 종교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기존 보조금 지원사업 (중복지원불가)	기존 보조금(국비·시비·구비)을 지원 받는 사업
일반 강좌 운영	예체능, 어학, 교과목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
일반 단순 모임	단순 친목회, 영업단체 연합회 등 사적 목적의 모임
▶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한 단계 발전하여 주민(마을)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함 단순모임에서 끝나는 사업은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볼 수 없음	

○ 사업신청 접수 ☞ 해당 동장의 추천을 득한 사업계획서만 인정(사업계획서 하단 확인란)

- 공고기간 : 2015. 7. 10(금) ~ 2015. 7. 31(금)
- 접수기간 : 2015. 7. 20(월) ~ 2015. 7. 31(금)

  ※ 1차 접수 후 필요시 별도 공모
- 신청서 교부 : 서대문구청 또는 서대문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접수(skw8769@sdm.go.kr) ☞ 제출된 서류는 반환 불가
- 접수서류 : 공고문 참조(붙임1)

○ 제안자 참여심사

- 심 사 : 마을공동체 소위원회
- 심사방법 : 제안자와 위원의 면담 및 질의 응답
- 심사내용 : 사업의 세부내용 청취(마을사업의 의지 확인), 사업비의 산출내역, 예산 타당성 검토, 사업의 기대효과, 사후관리 등

○ 사업 선정

■ 심사방법

– 1차 : 주관부서 사업검토(현장 조사 및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)

– 2차 :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

"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(2015.1.1시행)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기본사항이 법제화됨에 따라, 공모사업의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"토록 규정 (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종합계획, 정책기획담당관-1538호)

■ 선정(심사) 기준 ➜ *통단위 사업 우선 선정*

심사항목		내 용
사업의 타당성	사업의 필요성	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 여부, 마을(주민)이 필요로 하는 사업 여부
	사업의 공익성	해당 지역주민의 이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
	실현가능성	사업이 실질적 실현 가능여부 및 실시 방법의 구체성
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	자발성 및 창의성	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아이디어에 의한 사업인지 여부, 사업 아이템 및 문제해결 방식이 기존 사업과 차별화 여부
	주민참여(재원확보, 사업에 대한 열의)	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과정의 참여도, 주민의 의지와 욕구 파악 (참여 인원수 확인)
	지속가능성	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성 여부, 사업이 연속성이 있는지 여부
	자부담율 반영정도	자부담사업비를 심사기준에 적용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업의지 여부 판단
	사업의 파급효과	해당 사업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, 다른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인지 여부
	마을교육 의무화	마을공동체 이해 교육프로그램 계획 수립 여부

Implications

✓ **자부담 비율** : 2015년 자부담 비율에 대한 최저 확보기준을 정하지 않으나, 마을사업은 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자부담율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마을사업 지속가능성, 추진의지 확보

✓ **동점일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 선정!**

✓ **1개 주민(단체)당 1개 사업만 지원, 중복지원 불가**

○ 심사결과 발표

-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(심사내용은 비공개)
- 선정된 모임(단체)는 사업설명 및 회계교육 필히 이수

○ 사업 선정자 제출서류

-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
- 선정된 사업에 대해 조정된 금액 및 보완내용을 맞춘 사업실행계획서 1부
- 청렴서약서 1부
- 이행확약각서 1부
- 보조금 통장 사본 및 보조금 체크카드 번호

○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

- 보조금 교부절차

구청↔사업선정자	은행↔사업선정자	사업선정자	구청→사업선정자
협약체결	**통장개설 체크카드 발급**	**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**	**보조금 교부**

- 협약체결 : 서대문구와 마을사업자간 체결
- 협약조건

· 사업내용(예산, 대표자 등)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서대문구의 사전 변경 승인을 받을 것
· 거래내용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
·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함
① 당초 계획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하였을 때
②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③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
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를 지원 받았을 때
⑤ 타 부서에서 보조금을 중복지원 받고 있을 때
⑥ 기타 구청장이 부정하다고 인정할 때

○ 사업 관련 교육

- 일　　시 : 협약체결시 또는 필요시 수시교육
- 교육대상 : 사업선정자
- 교육내용 : 마을공동체 전반 사항 및 회계 및 전산 교육

  (회계처리기준, 집행절차,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, 사업변경 신청절차 등)
- 교육주관 : 구청, 우리은행

○ 보조금 교부(구 → 선정사업자)

- 보조금 월별 교부 : 2015년 변경사항

  ※ 사업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월별 교부

  (단,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기초는 200만원 미만일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,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」 개정-행정자치부 예규　제9호)
- 보조금관리시스템 또는 현지조사를 통한 사업 수행 점검 후 보조금 교부
- 보조금관리시스템 개선 : 품목별 비목 ➜ 사업별 비목으로 변경

지원 내용(구 → 선정사업자) : 보조금, 마을상담, 교육, 마을사업 컨설팅 등

- ○ 보 조 금 : 활동비, 업무진행비, 사업운영비 등 사업비만 지원
- ○ 지원한도 :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차등 지급

  ☞ 1개 사업 200만원 미만으로 지원(예정)
- ○ 제외대상 : 자산취득비, 시설비, 임대료 등 운영비

○ 사업비 집행(선정사업자)

-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집행

  -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비 집행기준(서대문구) - 붙임3 참조

○ **사업비 정산 및 평가**

■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 정산 : 2015년 마을공동체사업비 집행기준(서대문구)

■ 보고서 제출(선정사업자 → 구)

– 사업실적(결과)보고서·정산서·평가서 : 사업 종료 후 15일이내 제출

· 증빙서류 제출 : 지출결의서, 지출증빙 서류(원본)
(영수증, 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, 강사확인서 등)

· 통장사본 1부 : 최초 보조금 입금시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이체내역 전체

· 기타 자료 : 각종 유인물, 자료집, 사진, 동영상, 언론보도 자료 등

■ 사례집 제작 및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: 2015. 12월(예정)

■ 현장 점검 :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(서면 또는 현장 방문 점검)

Ⅵ 소요예산

○ **소요예산** : 23,000천원

○ **예산과목** : 자치행정과,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, 마을공동체 만들기
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, 민간이전, 민간경상사업보조

Ⅶ 행정사항

○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---------- 정책기획담당관

○ 마을공동체사업 참여홍보 ---------- 홍보과

○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 발굴 및 사업계획서 추천 ------- 동주민센터

붙 임 : 1. 2015년 마을공동체 특화마을 공모사업 공고문(안) 1부.
2. 사업신청 제출(서식)(제안서, 사업계획서 등) 각 1부.
3. 2015년 마을공동체 사업비 집행기준(서대문구). 끝.